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
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
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1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^{11/08}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53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,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

제25조에 따른 노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을 말한다.

2. “매점”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, 사무용품,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“신문판매대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매점 및 자동판매기(이하 “매점 등”)”로 하고, “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0㎡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의”를 “매점 등의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동작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”을 “매점 등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 내지 제5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

2. 위임장(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)
3.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), 한부모가족증명서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7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”을 “매점 등”으로 하고, “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8조를 각각 제9조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계약해지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1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
2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
3.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
4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5.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9조 중 “「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

순 위	장애인	노인	한부모가족	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가족및유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1~2급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65세 이상 노인으 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한부모가족지원 법」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 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 률」 「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의한 대 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 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, 보 호대상 한부모 가족, 6개월 이 상의 치료를 요 하는 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 람으로서 생활 이 곤란한 사람
2	장애등급이 3~4급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65세 이상 노인으 로 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 법」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 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 이외의 자	「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 률」 「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의한 대 상자 중 미과세 대상자	「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1순위 이외의 자
3	장애등급이 5~6급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			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 이유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매점 규모 제한을 삭제, 우선계약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대리인의 범위 한정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마련 등 위반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북한이탈주민을 매점 등 설치계약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 (제1조)
- 나.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반영하여 종전의 10m²이하의 시설로 한정된 매점 규모에 대한 단서 삭제 (제3조)
- 다. 대리인이 매점 등 운영 시 대리인의 범위를 직계·존비속 등으로 한정하여 계약대상자의 직접운영 강화 (제7조)
- 라.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마련 (제8조)
- 마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규정 (별표1)
- 바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계약 순위 추가 및 수급자의 범위 규정 (별표1)